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 629

제 안 연월일 : 2019. 4.25. 제 안 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44 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이들 2건의 조례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고, 준공업지역 내 공장(이전)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(10%)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○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 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,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(안 제19조제 2항) ○ 준공업지역 내 공장(이전)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 (10%)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2제2호라목 신설)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(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.

[별표2]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「의료법」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(10%)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# 혀

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 ① (생 략)

②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| 2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.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 시설. 사회복지시설. 공공직업훈 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종합의 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 다.

#### [별표2]

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 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 함)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 5조제1호 관련)

- 1. (생략)
-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다. (생략)

〈신 설〉

# 개 정 안
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(해 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).

#### [별표2]

5조제1호 관련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「의료법」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 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

현 행	개 정 안
	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(10%)
	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.
3. ~ 4. (생 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